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20

발의연월일: 2020. 8. 3.

발 의 자:조응천·박상혁·안규백

이탄희 • 박홍근 • 정일영

신동근 · 최인호 · 김병욱

장경태·한병도·기동민

임종성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하면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입법 당시 지역 출신이나 충원이 어려운 기술계 직종의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 에 따라 공무원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되었고, 공개경쟁 채용시 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수한 인재 선발이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유명 무실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국가직은 2004년 이후 중단되었으나, 지방직은 일부 지자체에서 도립대학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편법운영하거나 지자체 단체장의 인사청탁 수단으로 악용되어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에 폐지를 권고하였습

니다.

따라서 장학지원 채용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고 합니다(안 제85조 삭제).

법률 제 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1호 중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8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지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었던 사람에게는 제85조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신규채용) ① (생 략)	제28조(신규채용) ① (현행과 같
	<u></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	
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	
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	
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	
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	
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	
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	11
를 마친 <u>자와 제85조에 따라</u>	<u>사람을</u>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	

<u>한 자를</u> 임용하는 경우 12.·13. (생 략) ③ ~ ⑤ (생 략)

제85조(장학금의 지급) ① 국회사 | <삭 제> 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 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 장은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 기 위하여 필요하면 「초・중 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 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 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공 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 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을 부과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 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본인 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그 지급이 중단되거나 공무원으로 12. · 1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임용되지 아니한 때 또는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나 연대 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 령령등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그 지급 대상,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이 경 우 의무복무 기간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두 배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